

「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5일 심현정 의장이 발의하고, 2023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우리 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(안 제3조)

나.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의 유통·서비스업체의 상생협력사업(안 제4조)

다. 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(안 제5조)

라.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및 사후관리(안 제6~8조)

마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의회(안 제9~13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 군 농산물의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여  
농업인의 소득 증진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추구하려는 것으로,

○ 상생협력사업 실시 및 지원하고, 직거래장터를 개설·운영하며,  
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3호는 ‘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 
관한 사무’를 지자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,  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 
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 
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

○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,  
이용 촉진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호이익을 얻을 수  
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○ 검토결과,

상위법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다만,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등의 사업 장려 혜택이  
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사업 추진에  
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※ 관련 입법례: 전국 39개 지자체, 도 내 3개 지자체(강원도, 속초, 동해)